

기상예보사 · 기상감정사 취득교육 안내

기상면허란?

구분	기상예보사	기상감정사
역할	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상태를 예상하여 제공	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
업무범위	①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송, 신문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제공 ② 기업, 개인 등 특정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자에게만 기상예보를 제공	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결과 및 이론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 현상을 추정 ②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규모 등을 추정

기상면허 취득교육 이란?

기상 분야 기사 자격*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
* 기상기사, 기상감정기사

법적 근거

「기상산업진흥법」 제18조 제1항 제3호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.

「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 제1항

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"이란 「기상법」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.

교육과정 안내

대상

기상 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

기상기사 → 기상예보사 취득교육 수료(140시간) → 기상예보사 면허 취득

기상감정기사 → 기상감정사 취득교육 수료(140시간) →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

교육 방법 및 절차

이러닝교육, 집합교육 병행

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② 이러닝교육 신청 → ③ 이러닝교육(온라인 70시간)

⑥ 교육비 납부 ← ⑤ 집합교육 신청 및 자격확인 ← ④ 이러닝교육 수료

⑦ 집합교육(오프라인 70시간) → ⑧ 집합교육 수료

교육 내용 및 시간

대상 면허	교육 내용	이러닝교육	집합교육
기상예보사	① 일기도 분석 기법	70시간	70시간
	② 수치예보 해석 기법		
	③ 영상자료(위성, 레이더, 나뭇 등) 해석 기법		
	④ 예보 실무 및 예보문 작성 기법		
	⑤ 브리핑 실습		
	⑥ 생활기상 활용 기법		
기상감정사	① 기상 관측 자료 통합분석 기법	70시간	70시간
	② 지리 분석 및 기상현상특성 분석 기법		
	③ 조사 방법 및 기상자료통계 분석 기법		
	④ 기상역학 및 열역학 이론		
	⑤ 현장감정 실습 및 감정서 작성 기법		
	⑥ 기후 및 기상재해 분석 기법		

*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「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제9조 별표2에 따름

교육기간

- 이러닝교육 : 3개월 과정(매월 1일 시작)
- 집합교육 : 9일 ~ 10일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

* 기상면허 취득교육 운영 홈페이지 참조(<http://edu.kmiti.or.kr>)

교육비용

- 이러닝교육 : 무료
- 집합교육 : 유료(별도 공지)

수료조건

- 이러닝교육 : 3개월 이내 전 과정 100% 이수
- 집합교육 : 전 과정 100% 이수, 평가점수 60점 이상 달성

교육기관

한국기상산업기술원(서울시 서대문구 소재)

문의처

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교육팀
☎ 070.5003.5236 ✉ educenter@kmiti.or.kr